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46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안규백 · 김남근 · 박지원

부승찬 · 황명선 · 이재관

차지호 · 소병훈 · 윤후덕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적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5항 신설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자격기준 등에”를 “자격기준,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로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외로 반출하는 기본측량성과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한정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측량성과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를 국내에 설치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 출 금지) ① ~ ③ (생 략)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 출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 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 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외로 반출하는 기본측량성과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한정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기본측량성과를 저장·관리 하는 데이터센터(「지능정보 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를 국내에 설치할 것</u> <u>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 안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것</u>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u>자격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⑥ ----- ----- -----<u>자격기준,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u> 등에-----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